

- 정책의 신뢰성·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-

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·운영 계획

□ 추진배경

- 사규의 불확정 개념, 공백규정,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

□ 평가대상 : 제·개정 예정인 모든 사규

□ 평가기준 : 준수의 용이성, 집행기준의 적정성, 행정절차의 투명성

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·운영 계획

사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규 제·개정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분석,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「부패영향평가 제도」를 도입 운영코자 함

I 도입배경

- 사규의 불확정 개념, 공백규정,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
- 사규의 제·개정 예고를 통해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으로 신뢰성과 투명경영에 기여
- 법적근거 :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

※ 권익위 2012년 「반부패 경쟁력 평가」 평가부문 ‘부패유발요인제거·개선 (35점)’의 단위과제 (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,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)에 해당

- 평가 방법에 따른 가중치
 -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실적(25)
 - 사규 개선과제를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(25)
 - 사규공개관리규정 제도화(10)
 - 홈페이지 사규공개 정도(30)
 - 사규 제·개정 예고(10)

II 추진내용

1. 부패영향평가

□ 평가대상 : 제·개정 예정인 모든 사규

□ 평가방법

○ 평가시기 : 사규 제·개정(안) 입안 시 해당부서에서 감사팀으로 요청

○ 감사팀은 요청받은 사안을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, 검토 후 부패유발요인 발견 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

※ 부패유발요인 사전 분석과약 : 공단 청렴음부즈만 제도 적극 활용

□ 평가기준

준수의 용이성	집행기준의 적정성	행정절차의 투명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준수부담의 적정성• 제재규정의 적정성• 특혜발생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• 위암위탁기준의 적정성•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접근성과 공개성• 예측 가능성• 이해충돌 가능성

※ 부패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 ⇒ 별첨 참조

□ 현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

○ 현 사규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검토 후 부패유발 요인 발견시 감사팀으로 부패영향평가 요청

○ 공단 청렴음부즈만 안전 상정, 자문을 받아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으로 판단시 감사팀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규개정 추진

2. 사규 제·개정 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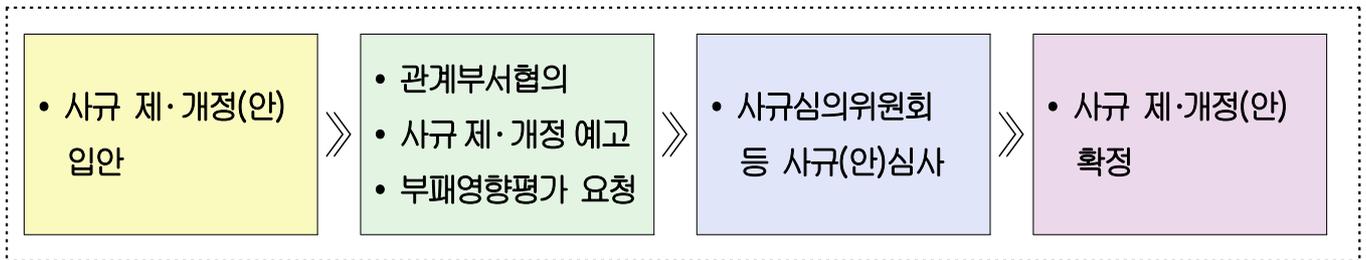
□ 예고대상 및 시기

- 예고대상 :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규(예 : 계약, 위탁관련 사규)
- 예고시기 : 제·개정안을 입안 후, 관련부서와 협의 실시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·개정 예고 동시 진행

□ 예고기간

- 예고기간 : 최소 20일 이상 권장 ⇒ 국민권익위원회
- 긴급을 요하거나 상위 법령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담당부서(경영기획파트)와 협의 후 결정

□ 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단계



- 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첨부 ⇒ 경영기획파트로 제·개정 요청
- 사규 제·개정 예고에 따른 의견 반영으로 수정 된 경우 ⇒ 부패영향평가 재실시

3. 사규 공개 및 제도화

□ 사규 공개 방법

-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권고 준수
- 공단 홈페이지 내 사규 공개 게시판 운영

□ 공개대상 사규

- 공개대상은 사규집에 수록된 사규수 기준
- 보안 및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되는 사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

Ⅲ 추진 계획

- 사규 제·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근거 마련 ⇒ 감사팀
 - 사규를 제·개정하려는 사업부서는 사전에 부패영향평가 요청
 - ▷ 감사팀은 부패유발요인 유, 무 판단시 청렴옴부즈만 적극 활용
 -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해당부서에 개선을 위한 권고 시달
- 사규 제·개정 예고 제도화 ⇒ 경영기획파트
 - 사규 제·개정(안)을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준비
 - 예고대상 사규 :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관련이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규
- 사규 공개관리제도 일상화 ⇒ 경영기획파트
 - 권익위원회의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른 제도화 준비
 - 공개대상 사규는 사규집을 기준으로 하며 보안 및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
- 사규 공개 및 제·개정 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⇒ 창의성과파트
 - 사규 공개와 예고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전면 개선
 - ▷ 현재 : 바로가기를 통해 '클린아이(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)' 접속 ⇒ 규정 개정사항 열람 가능
 - ▷ 개선 : 공단 홈페이지에 사규 전체 공개
- ※ 현 사규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사전 검토 후 부패유발 요인 발견시 감사팀으로 부패영향평가 요청 ⇒ 감사팀은 공단 청렴옴부즈만의 자문을 받아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권고안 작성

부패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

기 준 평가요소	검 토 항 목	비 고
1-1 준수부담의 적정성	• 각종 부담·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?	
	•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가?	
	•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?	
	•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?	
	•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상위법령에 과태료,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?	
	•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·해결할 수는 없는가?	
1-2 제재규정의 적정성	• 유사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?	
	•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(예:민사 또는 사적자치)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?	
	•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,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?	
	•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, 법령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?	
	•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?	
	•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?	
1-3 특혜발생의 가능성	•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(법률상·사실상의 이익 포함)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?	
	•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·대상·절차·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?	
	•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·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·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?	
	•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·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?	
	•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?	
2-1 재량규정의 구체성, 객관성	•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?	
	•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·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?	

기 준 평 가 요 소	검 토 항 목	비 고
2-1 재량규정의 구체성, 객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·예규·고시·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? •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·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(업무처리기준)을 이해하고 있는가? •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? 	
2-1 재량규정의 구체성, 객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가? •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? • 법령에 의하여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? •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? •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? •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? 	
2-2 위임, 위탁기준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임·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(재위임·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 규정 여부 등)에 있는가? •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·위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·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? • 위임·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·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? • 위임·위탁의 대상기관,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? • 위임·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? • 계속적·형식적·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? •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·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? • 위임·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,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? • 수임·수탁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·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? • 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,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? (취소와 정지사유 구분,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) • 수임·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임·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 규정이 있는가? 	

기 준 평가요소	검 토 항 목	비 고
2-3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	•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?	
	• 지원방법(계약방식 등)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?	
	•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?	
	•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?	
	•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, 결정절차,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?	
	•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고 있고,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?	
	•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, 사업결과 제출 의무 등은 규정되어 있는가?	
	•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(지원처분 취소절차 등)?	
3-1 접근성과 공개성	•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(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)?	
	•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?	
	•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?	
	•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?	
	•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등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?	
	•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?	
	•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?	
3-2 예측가능성	•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?	
	•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,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?	
	•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?	
	•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?	
	• 민원 신청시 필요한 요건·절차·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?	

기 준 평 가 요 소	검 토 항 목	비 고
3-2 예 측 가 능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건부 인·허가, 사전 인·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, 신청요건, 신청절차,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기관의 협의·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, 협의·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,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? 	
3-3 이 해 충 돌 가 능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기,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·신뢰성·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·신뢰성·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경직금자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?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?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? 		